민사소송법상 재심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주요문제

박 철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이 사회주의국가의 정책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법이 옳게 제정되여야 할뿐아니라 정확히 적용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6 폐지)

민사소송법상 재심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지는것은 재심과 관련한 수속법규범들을 사 건취급처리에 정확히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 된다.

공화국민사소송에서 재심제도는 판결, 판정이 확정된 후에 새롭게 판명된 사실사정에 근거하여 확정판결, 판정에 있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상제도이다.

재심이 확정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민사소송활동인것만큼 그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져야 재심사건을 당의 사법정책과 법적요구에 맞게 처리할수 있다.

재심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재심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재심의 대상은 한마디로 이미 확정된 판결 또는 판정이다. 다시말하여 재심의 대상으로 되는 판결, 판정은 그것을 내릴 당시의 사실사정에 비추어서는 정당하였지만 그것이 확정된 후에 새로 밝혀진 사정에 따라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또는 판정이다.

적지 않은 나라들의 소송법학자들속에는 재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원론과 일원론의 두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이원론은 재심의 대상이 원심판결의 취소요구와 원심의 대상의 두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원심의 대상이라는것은 1심 또는 2심재판에서 원고가 해결해줄것을 요구하였던 사건을 말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소송당사자는 재심신청을 통하여 원심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취급처리해줄것을 요구하므로 재심의 대상은 원심판결의 취소요구와 원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것이다.

일원론은 재심의 대상을 원심의 대상 하나만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재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원심의 대상이 곧 재심의 대상으로 된다는것이다.

도이췰란드의 법학자 베에레(Behre)는 재심을 상소와 류사한 구제수단으로 보면서 상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심의 대상만이 재심의 대상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도이췰 란드와 일본의 여러 소송법학자들은 그의 견해를 지지하고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을 정확한 견해라고 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대상은 원고가 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줄것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재판소도 원고의 요구에 비추어 심리를 진행하고 옳고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재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확정판결, 판정에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재심소송에서 재심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새로운 사실 즉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 해결하여줄것을 요구한다. 재판소는 당사자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에 근거하여 그 존재여부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한 다음 판단결과에 따라 확정판결 또는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하거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결국 재심의 대상은 재심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정과 이미 해결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여줄데 대한 요구로 보아야 한다.

재심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재심관할에 관한 문제이다.

재심관할에 관한 문제는 재심사건을 맡아 취급처리할수 있는 권한이 어느 재판소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재심은 재심사유에 기초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소송활동이다. 그런것만큼 재심사건의 취급처리에서는 재심사유의 존재여부를 확정하는것이 선결조건으로 된다. 특히 재심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활동인 것만큼 그 관할권이 어느 재판소에 부여되는가 하는것은 재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심은 새롭게 판명된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활동인 것만큼 재심사유의 정확성을 심중히 조사검토하는것이 중요하다. 재심사유에는 기본적으로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였다는것이 확증된 경우,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알려진 경우, 소송당사자 또는 재판소성원이 사건해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것이 확증된 경우, 이미 취소된 판결, 판정이나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에 근거하여 판결, 판정을 내렸다는것이 확증된 경우 등이속한다.

대륙법계나라들의 민사소송법에서는 대체로 재심을 원심재판소의 전속관할로 규제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재심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정과 새 사실에 기초한 사실심리를 모두 원심판결, 판정을 내린 재판소가 맡아 취급하도록 한다는것이다.

재심판할을 전적으로 원심재판소에 부여하게 되면 제기되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수 없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나라들의 민사소송법에서 규제하고있는것처럼 재심사유가 주로 원심재판소의 재판상오유와 직무상범죄와 관련된다고 볼 때 재심을 원심재판소의 전속관할에 둔것자체가 사건의 옳바른 해결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재심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재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기본으로 된다. 그것은 재심사유의 존재여부에 따라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겠는가 아니면 재심제기를 기각시키겠는가가 결정되기때문이다.

재심에서는 판결, 판정이 확정된 후에 새롭게 나타난 사실 즉 재심사유가 판결을 내릴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는가, 그것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깨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본질적인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조사검토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때문에 재심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리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진행하려면 원심재판소가 아닌 보다높은 급의 재판소가 맡아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더우기 소송당사자 특히 재판소성원이 사건해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여 판결, 판정이 잘못 내려지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확정을 원심재판소가 하도록 하는것

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로부터 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는 확정판결, 판정의 법적권위와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원심재판소에 재심관할권을 부여하지 않고있다.

재심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재심제기신청에 관한 문제이다.

확정된 판결, 판정에 있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상제도인 비상상소제도에서는 비상상소의 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고있다. 비상상소제도는 확정된 판결이나 판정이 법을 본질적으로 위반하였거나 사실인정이 무근거할 때 그것을 바로잡음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상제도이다. 때문에 법적요구를 위반한 확정된 판결, 판정을 바로잡는 비상상소는 그 제기사유를 알게 되였을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다.

그러나 재심에서는 비상상소에서와 같이 전국적범위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오직 개별적인 판결, 판정에 있는 잘못을 바로잡는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적인 판결, 판정에 있는 잘못을 바로잡는 문제는 소송당사자들의 실체법상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것만큼 재심제기에 대한 신청은 소송당사자 또는 사건해결에 리해관계를 가지는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따라서 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는 재심제기신청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로 규정하고있다.

소송당사자나 사건해결에 리해관계를 가지는자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안에 재심제기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재심을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재심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재심사건과 아무런 리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재심을 신청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비상상소제도에서는 제기사유를 알게 된 당사자라면 그 누구든지 비상상소제기를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즉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 원심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사건해결에 리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비상상소의 당사자로 될수 있다. 따라서 그 누구든 확정된 판결, 판정의 위법성과 무근거성을 리유로 비상상소를 제기하여줄것을 신청할수 있다.

그러나 재심제도에서는 재심제기신청의 당사자를 일정하게 제한하고있다. 즉 사건당 사자나 사건해결에 리해관계가 있는자 그리고 해당 재판소와 검찰소만이 재심제기를 신 청할 권한이 있다.

재심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재심사건의 취급처리가 끝난 다음 다른 재심사유에 기초한 재심제기를 또다시 신청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소송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거를 가지 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이것을 일명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재심도 새롭게 판명된 사실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소송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재심의 근거는 다름아닌 재심사유를 말한다.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같은 사유에 기초한 재심을 재차 제기할수 없다.

그러나 이미전의 재심사유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유를 근거로 하는 재심제기는 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재판소가 이미 재심사건을 취급처리한 경우에도 또 다른 재심사유를 근거로 하는 재심제기신청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그 당사자가 재심을 통하여 보호받으려는 실체 법상의 권리와 리익이 사실관계의 변화로 하여 실현될수 없는 경우에도 재심제기를 신청 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재심제도를 설정하게 된 근본목적은 확정된 판결, 판정에 있는 잘못으로 하여 침해된 민사상의 권리와 리익을 회복하려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재심을 통한 실체법상의 권리와 리익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의의가 없다면 그러한 재심제기신청은 제한하여야 한다. 실례로 양육비나 부양료청구와 관련한 판결이 확정된 다음 재심사유를 알게 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나 부양료를 받아야 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여도 현실적의의가 없 으므로 재심제기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

재심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재심사건을 취급하는 과정에 비상상 소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비상상소제도와 재심제도는 확정된 판결, 판정에 있는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제기사유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므로 취급처리절차도 서로 구별된다.

비상상소와 재심은 우선 제기절차에서 차이를 가진다.

비상상소제기는 사건기록에 명백히 나타나있는 잘못을 리유로 하기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발견하는 즉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할수 있다.

그러나 재심제기는 사건기록상의 잘못이 아니라 새롭게 판명된 사실사정을 그 근거로 하기때문에 재심제기신청의 사유가 진실하고 정당한가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재심에서는 해당 재판소나 검찰소가 재심제기신청의 정당성에 대한 1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한 기초우에서 재심을 제기하여줄것을 신청할수 있다. 즉 재심에서는 비상상소와 달리 1개월간의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여야 한다.

비상상소와 재심은 또한 사건에 대한 심리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다.

비상상소에서는 사건기록에 나타나있는 잘못은 물론 사건기록전반에 걸쳐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면적으로 심사한다. 그것은 비상상소가 판결, 판정에 있는 위법성과 무근거성을 리유로 하기때문에 사소한 법위반이나 법해석적용에서의 잘못에 대해서까지 바로잡자면 사건기록전반을 검토하여야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재심에서는 사건기록이 아니라 재심사유로 되는 새로운 사실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된다.

비상상소와 재심이 그 제기의 절차나 심리범위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는것만큼 재심사건의 취급과정에 비상상소제기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그것을 동시에 취급할수 있는 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그 절차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제기된 사건을 따로따로 갈라서 취급한다면 많은 시간과 로력을 랑비하게 되며 나아가서 잘못 내려진 판결, 판정에 의하여 침해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제때에 보호해줄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소송실무실천에서는 재심사건취급처리과정에 비상상소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동시에 취급처리하도록하고있다.

재심사건의 취급처리과정에 비상상소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그것을 동시에 취급할수 있는것은 재심절차안에서 비상상소를 취급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재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는 재심과정에 비상상소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침이 없이 직접 심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재심사

건에 대한 심리과정에 필요에 따라 사건기록전반을 검토할수 있다. 검토에 기초하여 재심 사유가 진실하고 정당한가, 새로운 사실이 판결, 판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줄수 있을만큼 본질적인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해당 사건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하 여 비상상소에서와 같이 사건전반을 련관시켜 검토해볼수 있다.

이와 같이 재심취급처리과정에 비상상소를 동시에 심리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재심과정에 비상상소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함께 취급할수 있다.

그러나 비상상소취급과정에 재심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취급하지 말고 반드시 재심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것은 재심에서는 그 신청의 정당성에 대한 1개월간의 조사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비상상소절차에 의해서는 재심사건을 취급할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때문에 비상상소취급과정에 재심사유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비상상소취급처리를 정지시키고 재심절차를 개시하여 여기에서 비상상소사건을 함께 취급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법일군들은 재심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소송활동을 진행해나감 으로써 민사소송절차가 우리 당과 국가의 사법정책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 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민사소송법, 재심, 비상상소